

# 「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 4. 2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3. 4. 16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3. 4. 16(화)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산림과장)

-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「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함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두장)

-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“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”를 위한 “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”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2012.2.22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의9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『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산림수도인 우리군의

현실을 고려 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안 1부